

# 심 사 보 고 서

1.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내 무 위 원 회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윤영길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정조례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대 구미시의회 개원과 함께 상임 위원회 증설에 따라 전문위원 1명이 증원  
되어 의회사무국의 사무직원 정수를 당초 24명에서 25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혐오시설 근무자에게  
5만원 내지 20만원 범위안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 장려 수당을 현재 분뇨처리  
종사기관 근무자에게는 15만원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종사기관 근무자에게  
는 1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것을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기관 구분없이

15만원씩 지급토록하는 개정내용이었으며, 이는 열악한 근무 조건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수당을 인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자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전국적인 통일과 자치단체간의 과세 형평을 위해 당초 소득세액의 7.5%를 10%로 인상하여 96. 1. 1부터 시행토록 하는 상위법 개정에 의한 조례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열악한 근무 조건하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개정 내용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으니,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